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3호 2015. 7. 29.(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개정되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 시민단체가 배제되어 포함시키고자 함.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74) 또는 Fax(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규인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함.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서 시민단체가 배제되어 포함시키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정비(제2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안 제1조 ~ 제9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췌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을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5급”을 “소속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소속”을 “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기내로”를 “임기 내로”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제8조제12항의 규정”을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실조사등을”을 “사실조사 등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회에 보고)”를 “(구의회에 보고)”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공직자윤리법</u>」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u>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u></p> <p>2. <u>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충무국장으로 한다.</u></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u>각호의 규</u></p>	<p>제2조(구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1명을 포함한 5명--</u><u>각 호에 따라</u>-----</p> <p>1. <u>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2. <u>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u>-----</p> <p>②-----<u>각 호에 따</u></p>

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생략)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5급 이

라-----.

1.-----3
명 중-----.

2.-----2
명 중-----.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원-----
-----해당-----
-----.

제3조(기능) ① -----
각 호-----.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승
인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따라-----

②-----
각 호-----.

1.-----소속 5급-----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의회에 보고) (생략)

-----.

1.----제8조제7항-----
-----제8조제12항-----

2.----제8조의2에 따른-----

3.----제22조에 따른-----

4.----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
-----사실조사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구의회에 보고) (현행과 같음)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 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 자윤리법 <u>시행규칙</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 리위원회”로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 ----- ----- -----<u>시행규칙</u>----- -----. ----- ----- ----- ----- -----.</p>
---	--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